

中國商標法改正方向

이 글은 지난 9월 17일 본회 발명장려관에서 열린 중국상표제도 설명회에서 中國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표대리부 陸普舜 부부장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중국의 급속한 경제구조의 발전도상에서, 현행 상표법은 이 발전에 다소 부응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1989년 이래로 중국내 소관관청은 중국상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그 개정안에 의거한 주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보호 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연합상표, 증명상표, 단체표장, 방호상표, 특히 서비스표가 추가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2. 개정안의 효력

현행 상표법상, 상표가 일단 출원완료되었거나 거절되었을 경우에 지정상품 혹은 그 상표를 보정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상표출원이 법규정에 부적합하여, 심사관이 그 출원의 내용이 보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표국이 동 출원일을 계속 유지하고 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면,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된 출원이 여전히 법률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 출원은 거절사정될 것이다.

3. 분쟁

현행 상표법은 누구든지 심사후 예비로 승인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이의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등록이 승인되어

등록증이 발급될 것이며 동 상표는 공고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등록전 이 아니라 등록후에 제출될 것이다.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보다는 훨씬 길어져서 아마도 등록 후 1년동안으로 될 것이다.

그밖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성명권자나 초상권자는 타인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 사용자는 식별력은 있지만 공정한 경쟁원칙을 위반하는 타인이 등록한 동일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분쟁으로서, 이해관계자는 사용(지정) 상품이나 연관상품에 관한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기 혹은 위조 및 모조하여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근거가 합당하다면 상표국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것이지만 그 결정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해 재심사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의신청(opposition)이란 타국의 취소심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등록후 야기되는 모든 논쟁을 이의신청(opposi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 한다고 본다.

4. 대리인 체계

현재, 중국은 2개의 track system을 사용하는데 track system이라함은 해외상표출원건에 관하여는 공상행정기관이 임명한 대리인이 업무

를 수행하고 국내상표출원권에 관하여는 출원인 지역에 있는 공상행정관료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대리인체계를 폐지한다. 즉, 국내외건에 대하여 공적으로 임명된 대리인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나, 소수의 대리인은 해외상표출원을 담당할 수 있다.

5. 상표독점사용권 보호강화

현행법상, 다음의 3경우는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중국 상표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은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침해가 될 것이다.

가. 등록권자의 승락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나. 승락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제작 혹은 판매하는 행위.

다.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사용권에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

개정안은 상기의 다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나 도형을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명 혹은 상품포장으로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려고 고의로 타인보관, 운송, 우편, 인쇄를 제공하는 행위.

피해자는 상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침해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당국에 동 사건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등록상표권자의 승락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

(2) 승락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제작, 인쇄,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독점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행위.

(4) 고의로, 타인에게 보관, 운송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타인의 상표독점사용권을 침해하기 쉽게 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기호 혹은 도형을 상품명이나 포장으로 사용하거나, 관련영업에 사용하여 일반인을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

(6) 또다른 관점에서, 타인의 상표독점사용권 침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상기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또는 영업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될시, 결정은 상표국이 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등록상표독점사용권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측은 그 침해행위 발생지역이나 침해자의 주소지관할 공상행정당국에, 혹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당국은 동건을 처리해야할 책임을 진다.

공상행정당국은 직권으로 상표침해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등록상표독점사용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침해자에게 그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하고 침해상품에 대하여 압류, 봉인조치를 취하여 필요하다면 침해상품에 관련한 대금지불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각 침해사건의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권자는 인민법원이나 공상행정당국에 불법상품이 세관에 입고될때 동 불법상품을 유치하도록 세관에 위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상표등록의 등록권자는 상기 요청을 제기할 때 재정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치된 상품소유권자가 상기 등록상표사용행위가 합법적인지 확증할 수 없을 때 세관은 앞서 언급한 조항에 따라 동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

상표등록권자는 세관에 요청하여 유치시킨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책임을 져야한다.

현행법과 비교하여 볼 때 이밖에 약간의 다른 개정안이 있지만 상술한 5항이 본 개정안의 핵심이 된다.♣